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38호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7 8 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치 수 과 2
○ 공 고 제 1 8 8 호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8
○ 공 고 제 1 9 9 호	2025년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총 무 과 185
○ 공 고 제 2 0 0 호	「남동구 공공청사등의 주차장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186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호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98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호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07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호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15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4 호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24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5 호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34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6 호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46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7 호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58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8 호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74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9 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84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0 호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99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호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11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2 호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2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3 호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3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4 호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4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5 호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56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6 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69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178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경작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24.

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불법경작)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5. 1. 24. ~ 2024. 2. 8.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행 위 자		위반사항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7번지(천) 일원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경작)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번지(천) 일원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경작)

6. 원상회복 이행 기한 : 2025. 2. 8.까지

7. 유의사항

가. 기간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 (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남동구청 치수과 하천팀(☎032-453-84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5-1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4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4-2401호 및 2025년 1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5-62호로 우리 구 운연천(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에 대하여 2025년 1월 23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5년 2월 8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33조,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7번지(천) 일원	불법경작지	796㎡	경작지 원상회복 및 불법시설물 철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번지(천) 일원	불법경작지	590㎡	

2025. 1. 24.

남 동 구 청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운연동 491-7번지 일원 및 195-7번지 일원]



□ 현장사진



<운연동 195-7번지 일원(미시정)>



<운연동 491-7번지 일원(미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하천법」 위반(불법경작)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5-188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 생 교 육 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	보 육 정 책 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전청취안	도 시 재 생 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 보고안	보 건 행 정 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보 건 행 정 과

2025. 1. 23.

남 동 구 청 장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5. 2. 11.(화) ~ 2. 19.(수)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5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5
■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3
■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	 41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5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1
(보육정책과)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 115
(보육정책과)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127
구의회 의견청취안
(도시재생과)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 보고안 163
(보건행정과)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169
(보건행정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6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기획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6조)
- 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7조)
- 재정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8조)
- 안전교육국 신설과 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9조)
- 복지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10조)
- 환경교통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행정절차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경제국, 안전교육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및 정보통신과”를 “일자리정책과 및 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14.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세무2과, 기업지원과”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안전교육국) ① 안전교육국에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5.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⑤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1]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업무계획(전부)	기획예산과	연1회	2월 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예산편성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결산(전부)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목록, 지출금액 사용일시	총무과	월1회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가·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	전 부	환경보전과	월1회	검사결과 후 즉시	인터넷 게재
4.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통계연보	정보통신과	연1회	통계조사 집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인구통계	총무과	월1회		
	구정현황	총무과	수시		
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기획예산과	연1회	2월 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 사항	공개청구 내용 및 심의결정사항	인원여권과	수시	심의회의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부정불량식품 및 회수공고	식품위생과	수시	공고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단속현황	환경보전과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8.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보육시설 현황	보육정책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사회복지시설 현황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	신고포상금 예산 및 잔액	해당부서	월1회	매월말 또는 초	인터넷 게재
10.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법령기준에 따름	해당부서	수시	법령기준에 따름	인터넷 게재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1. 중장기 종합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기획예산과	연1회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수수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공공요금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결과물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결과 보고서	도로과	수시	진단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도로과	수시	예산편성 후 1개월 이내 집행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안전총괄과	수시	예산편성 후 1개월 이내 집행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공사 및 물품 발주계획 목록	해당부서	수시	15일 이내	인터넷 게재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법령기준에 따름	재무과	수시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1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심의결과	세무1과	수시	3일 이내	인터넷 게재
2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개최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2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문	해당부서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별지 2]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구청장 (노인정책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2. 기초연금 신청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장애인 지원과)	1. 장애인 등록 · 취소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 행정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도시 디자인과)	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구청장 (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보 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환경교통국 및 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국의 설치) ----- ----- ----- <u>재정경제국, 안전교육국</u> ----- -----.
제6조(정책기획국) 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u>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및 정보통신과</u> 를 둔다.	제6조(정책기획국) ① ----- ----- 일 <u>자리정책과 및 기업지원과</u> ----- -----.
② 정책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u>	8. <u>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u>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u>재난·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u>	14. <u>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u>
15. <u>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u>	<삭 제>
16. <u>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기존 제16호 삭제 및 제14호에서 이동 2022.10.13.)</u>	<삭 제>
17. <u>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18.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6.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17.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8. ~ 21. (생략)

제8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및 농축수산물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삭 제>

<삭 제>

제7조(행정국) ① -----

----- 민

원여권과-----

-----.

②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4. ~ 17. (현행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제8조(재정경제국) ① -----

----- 세무2과-----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신설>

<삭제>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9조(안전교육국) ① 안전교육국에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 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생략)

5. ·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

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

항

12.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

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5.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

항

1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복지국) ① -----

-----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8. (현행 제4호와 같음)

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8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
항

12. (생 략)

13.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
한 사항 등

제10조(환경교통국) ① 환경교통
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건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
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
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8.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
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제11조 (생 략)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신 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4장 사업소

<삭 제>

9. (현행 제12호와 같음)

10.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
한 사항 등

제11조(환경교통국) ① -----

----- 교통행정과 및 자동
차관리과-----

--.

② -----

-----.

1.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삭 제>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삭 제>

<u><신 설></u> <u>제15조</u> ~ <u>제17조</u> (생 략) <u>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u> <u><신 설></u> <u>제18조</u> ~ <u>제20조</u> (생 략)	<u>제4장 사업소</u> <u>제16조</u> ~ <u>제18조</u>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u><삭 제></u> <u>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u> <u>제19조</u> ~ <u>제21조</u>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 종 원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7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별표 3] 개정
 - (일반직) 본청 4급 : 6명 → 7명 (증 1명)
 - (일반직) 본청 5급 : 37명 → 38명 (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253명 → 1,251명 (감 2명)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30	-				
	2급	1	1				
	4급	9	7	1	1		
	5급	69	38	2	8	1	20
	6급 이하 계	1,251	-				
별정직 계		4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직급별 정원) 및 별표3

나. 비용발생 요인

4급·5급 각 1명 증원 및 6급이하 2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증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5년 예산(안)의 직급별 인건비(기본급, 수당) 및 물건비(직급보조비) 등 적용

나. 추계 결과

4급·5급 각 1명 증원과 6급이하 2명 감원에 따라 연간 총 72,182,05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된다.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 종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72,182	73,626	75,098	76,600	78,132	375,63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72,182	73,626	75,098	76,600	78,132	375,638
	지방세	72,182	73,626	75,098	76,600	78,132	375,638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2%로 가정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8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함으로써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석1동 청사 소재지 변경 (별표)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동)
간석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38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47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간석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동)
만수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서창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 (서창동)
남촌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32 (남촌동)
논현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논현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 (논현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변동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별도 비용 미발생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오 근 선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9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관련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전)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후)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규정 : 안 제4조~제6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7조, 제8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9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 : 안 제10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11조
- 준용 규정 : 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 「축산법」 제35조, 제42조의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31조의3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동구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

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물특산물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시설의 총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우수 식재료 사용 시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장·교육감·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3. 남동구 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사
 6. 인천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친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학교급식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학교급식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단, 구체적 지원 기준에 의한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동구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참고자료]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하 생략)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 식품비와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건강·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식경비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식재료”란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식품

위생법」 제48조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또는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특산물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2.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방안
3.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
4. 인천광역시 센터 설치·운영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장은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식, 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등의 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우수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3.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상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급식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 급식업무 담당과장, 시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인천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마.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바.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사.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전문가
 -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관찰·점검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2. 무상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3.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4.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
5. 무상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배송 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6.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친환경식재료 등의 가공시설, 검수·검사시설, 물류창고,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거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구별로 설치되는 센터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운영현황을 시장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등의 장에게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이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및 지원현물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지원현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등의 장에게 회수할 지원현물이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0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부료 요율 및 감면율 정비
 - 대부료의 요율 기준 명확화(안 제27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요율 완화(안 제27조, 안 제31조)
 -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율 상향(안 제31조)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 확대(안 제33조)
 -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범위 확대(안 제34조, 안 제62조)
- 장애인 용어 개선(별표 2)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81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검토
-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추진계획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50이상”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이상”을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으”를 “2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제31조제4항 중 “65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
부를 감액조정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제62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이내 분납

별표 2 중 4. 보건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진 료 활 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u>50이상</u> 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① ----- ----- ----- ----- <u>50</u> ----- ----- ----- ----- ----- ----- -----.
②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u>40이상</u> 으로 한다.	② ----- ----- ----- <u>40</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u>25이상</u> 으로 한다.	③ ----- ----- ----- <u>25</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	3. ----- ----- -----.

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일부개정 2015. 7. 31, 일부개정 2018.3.20, 2019. 7. 12., 2022.10.06.)

4. (생략)

④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 10-----

4. (현행과 같음)

④ -----

----- 10-----.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삭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6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삭 제>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80퍼
센트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일부개정 2022.10.06.)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생략)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 3.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 전 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이미숙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2022. 4. 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2022. 1. 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4. 20.>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8. 12. 4.>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
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
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
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 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⑤ 삭제 <2022. 4. 20.>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22.>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전문개정 2009. 4. 2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대통령령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읍부즈만지원단-1351(2024.3.27.)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I.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 (문제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경제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수준에서 대부료가 정해짐

- 사회경제적기업은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기업인 사회경제적 기업의 재화 및 용역은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반면 경쟁력은 낮음

* 4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③ 마을기업: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건강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

④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참고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2022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증가하나, 코로나 19 장기화, 고금리·고유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매출감소, 고용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19년) 21,756개, (2020년) 24,920개, (2021년) 28,041개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우선 대부 및 사용, 대부료 감면 등을 실시중

* 2021년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은 총16개 부처에서 57개 주요사업을 운영(2021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고용노동부, 2022. 11월)

** (「사회적기업법」 제11조) 사회적기업 등에게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도시재생법」 제30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생 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가능,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자활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서비스업, 고령자·여성의 비율이 높아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매출하락 및 경영악화로 이어진 상황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경제의 성장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료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줄 필요
-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18.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일반재산 대부료를 100분의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감경 규정을 두고 있음
- 하지만 대부요율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부담하는 대부료의 감면효과가 훨씬 큼

* (예) 1억원상당의 일반재산을 ①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50, 100분의 50 감면하는 경우 대부료→ 250만원, ②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20→ 200만원, ③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100만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은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는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이보다 완화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

-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천분의 10,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1천분의 20 이상,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1천분의 10

II.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예: 1천분의 20 또는 1천분의 10) 완화
 - ※ 조치 필요사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사용료 및 대부료 급상승 시 감액 대상을 전액으로 확대

I.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음
 - * 「공유재산법」 제2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 기존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이 100분의 70이었으나, 최근 100분의 100(전액)으로 확대함
 - * 2020. 12. 22.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
- (문제점) 상위법령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아직 반영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존의 100분의 70으로 유지
 -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급상승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감액 조정 범위를 전액으로 확대할 필요

II. 개선방안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을 전액으로 확대
 - ※ 조치 필요사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704(2024.6.13.)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I 추진 배경

-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령-자치법규간 용어 통일 필요
- 국가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을 차별·비하하는 용어로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대체용어로 정비 필요

II 정비대상 용어 선정 기준

-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
 - 자치법규 상 용어가 장애인 관련 법령* 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16년 2월)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의 경우 제·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비
-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 개선
 -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선정한 장애인 차별·비하용어 정비
 - 장애인 관련 양대 연합단체*에 용어 관련 의견수렴 실시 및 반영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산하 회원 단체 40여개

Ⅲ 지자체별 정비대상 자치법규 수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총 288건으로 중 시·도가 33건(11.5%), 시·군·구가 255건(88.5%) 차지
- 정비대상 상위 지자체는 경기(35), 전남(34), 경북(33), 서울(31) 등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계	31	14	10	13	6	6	3	3	35	22	15	24	19	34	33	13	7	288
광역	7	1	-	2	3	1	-	3	1	4	-	1	-	-	3	-	7	33
기초	24	13	10	11	3	5	3	-	34	18	15	23	19	34	30	13	-	255

Ⅳ 주요 정비내용

① 장애인, 장애우 ⇨ 장애인

- (정비필요성) 1989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개정법 제2조에 따라 법령상 명칭이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
 - 법령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장애자”라는 용어를 비하용어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정비 필요

정비 전(사례)	정비 후(예시)
제0조(정의 및 시설의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장애자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0조(정의 및 시설의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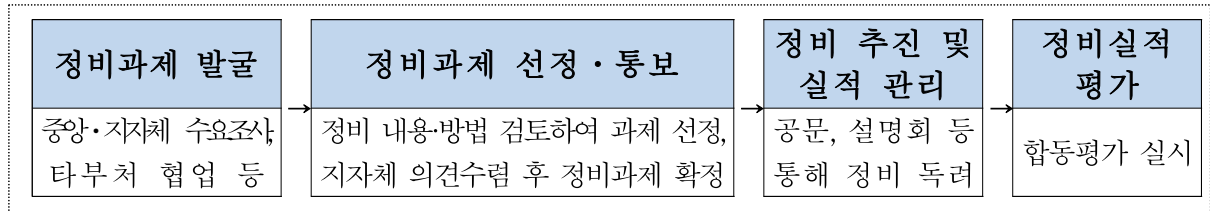
Ⅴ 추진절차

- ① (1차연도)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부처·지자체 의견

수령을 통해 정비과제로 선정, 선정된 정비과제 지자체 통보

② (2차연도) 1차 연도에 선정된 정비과제의 정비실적 점검·관리 및 독려

③ (3차연도) 2차 연도 말 기준 정비실적 집계 및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VI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자체 통보 (~7월 말)
- 자치법규 정비실적 조사 및 정비 독려 (25년, 매분기)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26년 2월)

*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지표 반영 완료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41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5년 상반기 위탁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2개소)
- 위탁시설

(2025. 1. 1. 기준)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현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예정)
남동 보듬이나눔이	인주대로681번길 62-11 (구월1동)	485.8	49 (37)	2010.07.10.	2025.03.01. ~ 2030.02.28.
단비	구월말로3번길 70 (구월4동)	451.02	27 (27)	2013.03.14.	2025.05.13. ~ 2030.05.12.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8,861,309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2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5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4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5년 ~ 2029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5년)
- 발생비용 : 8,861,309천원 (국45, 시39, 구16)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7,468,890천원, 구비 1,392,419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 미 경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420,769	1,456,195	1,492,684	1,530,266	1,568,976	7,468,890
국시비보조금		1,420,769	1,456,195	1,492,684	1,530,266	1,568,976	7,468,890
세 출		1,690,490	1,730,168	1,771,036	1,813,129	1,856,486	8,861,30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1,690,490	1,730,168	1,771,036	1,813,129	1,856,486	8,861,309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420,769	1,456,195	1,492,684	1,530,266	1,568,976	7,468,890
	보 조 금						
	국비	755,191	776,063	797,562	819,705	842,512	3,991,033
	시비	665,578	680,132	695,122	710,561	726,464	3,477,857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 교부금						
	소 계	269,721	273,973	278,352	282,863	287,510	1,392,419
구 비	구 비	269,721	273,973	278,352	282,863	287,510	1,392,419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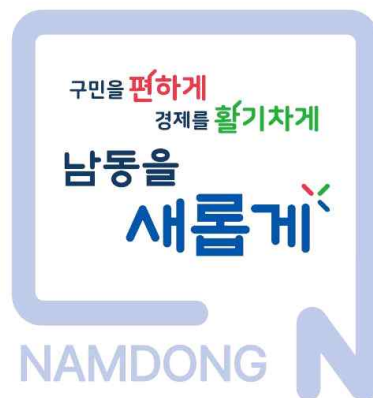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현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위별 평균 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공보육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요 지

구청장 결재 |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2개소)

(2025. 1. 1. 기준)

명칭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비고
남동 보듬이나눔이	인주대로681번길 62-11 (구월1동)	485.8	49 (37)	2010.07.10.	사임원 제출 (24.11.18./ 사유:가족돌봄)
단비	구월말로3번길 70 (구월4동)	451.02	27 (27)	2013.03.14.	

- 위탁(예정)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1월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 '25. 2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2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2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2025년 상반기 위탁 해지 및 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 2개소

(2024. 12. 5. 기준)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비고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남동 보듬이나눔이	인주대로681번길 62-11 (구월1동)	485.8	49	37	이상순	2020.08.01. ~ 2025.02.28.	사업원 제출 (가족돌봄)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비고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단비	구월말로3번길 70 (구월4동)	451.02	27	27	조경희	2020.05.13. ~ 2025.05.12.	

- 위탁(예정)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남동보듬이나눔이 : '25. 03. 01. ~ '30. 02. 28.
 - 단 비 : '25. 05. 13. ~ '30. 05. 12.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5. 1월 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월 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 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기준 (교육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함

V**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1월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25. 2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2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2월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5 - 2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비고
남동 보듬이나눔이	인주대로681번길 62-11 (구월1동)	485.8	49 (37)	2010.07.10.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의무 시설 ※추후 수요 있을 시
단비	구월말로3번길 70 (구월4동)	451.02	27 (27)	2013.03.14.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남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의무 시설로, 추후 24시간 보육 서비스 수요가 있을 시 반드시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단비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남동보듬이나눔이 : '25. 03. 01. ~ '30. 02. 28.

○ 단 비 : '25. 05. 13. ~ '30. 05. 12.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5. 01. 02.(목) ~ 2025. 01. 22.(수)

○ 접수기간 : 2025. 01. 16.(목) ~ 2025. 01. 22.(수)

○ 접수장소 : 평생학습관 2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남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의무 시설로, 추후 24시간 보육 서비스 수요가 있을 시 반드시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단비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교육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공고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함
-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재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3042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의거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운영
- 위탁시설

명 칭	소재지	시설규모 (㎡)	개소
아이사랑꿈터 1호점	운연천로 11, 서창동 꿈에그린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52.25㎡(46평)	‘19.11월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남촌동로 32, 남촌도림동행정복지센터	70㎡(21평)	‘22.07월
아이사랑꿈터 11호점	만경로28번길 3, 만수5동행정복지센터	66㎡(20평)	‘22.10월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4동행정복지센터	90㎡(27평)	‘22.09월

- 위탁기간 : 2025. 5. 1. ~ 2027. 4. 30. (2년)
- 위탁내용 :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관리 및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시설관리(안전관리, 위생, 청결 관리 등) 및 운영
- 소요예산 : 553,625천원

□ 위치도

1호점 (서창2동)		
10호점 (남촌도림동)		
11호점 (만수5동)		
12호점 (간석4동)		

□ 보고사항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참고자료

- 참고 1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참고 2 : 관련 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나. 비용발생 요인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 : 2025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침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연간 인상률 3% 적용)
- 비용추계 범위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운영비용

나. 추계 결과

1) 추계기간 : 2025. 5월 ~ 2027. 4월

2) 발생비용 : 553,625천원

(인건비 354,320천원, 사업비 88,580천원, 운영비 110,725천원)

※ 2025년 개소별 연간 지원단가 : 69,203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 국비28%, 시비 36%, 구비 36%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74,542	179,778	354,320
국시비보조금		174,542	179,778	354,320
세 출		272,722	280,903	553,625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272,722	280,903	553,625
재원 조달		272,722	280,903	553,625
의존 재원	소 계	174,542	179,778	354,320
	보조금	76,362	78,652	155,014
	국비	76,362	78,652	155,014
	시비	98,180	101,126	199,306
자체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소 계	98,180	101,126	199,306
	지방세	98,180	101,126	199,306
지 방 채	세외수입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상승요인 반영하여 연간 3% 인상률 반영

[참고 1]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 10~12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10~12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II

추진방향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위탁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III

위탁개요

- ☐ 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시설규모	개소	(현)위탁기간
아이사랑꿈터 1호점	운연천로 11, 서창동 꿈에그린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52.25㎡ (46평)	'19. 11월	2022. 5. 1.~ 2025. 4. 30.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남촌동로 32, 남촌도림동행정복지센터	70㎡ (21평)	'22. 7월	
아이사랑꿈터 11호점	만경로28번길 3, 만수5동행정복지센터	66㎡ (20평)	'22. 10월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4동행정복지센터	90㎡ (27평)	'22. 9월	

- ☐ 위탁사무 내용 :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관리(대상자 모집 및 이용자관리, 안전 서약서 사전 고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시설장 등 임용사항, 인력운영
 - 시설관리(안전관리, 위생, 청결관리, 하자관리, 건물화재 보험가입 등) 및 운영
 -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놀이 활동을 위한 교구 및 도서 관리
- ☐ 신청자격 : 인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 선정방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 ☐ 소요예산 : 553,625천원(「2024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연간 인상을 3% 적용)

IV

세부추진계획

- ☐ 위탁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방법
 - 모 집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자격요건 : 인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기관 운영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 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

○ 신청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에 소재하거나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

○ 선정방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 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함.

□ 위탁기관 선정절차

① 남동구의회 보고→ ② 공고→ ③ 신청자 접수(법인·단체 등) → ④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⑤ 수탁체 결정 → ⑥ 위탁계약 체결 → ⑦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구 -> 시)

□ 추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보고안 제출 : 2025. 1월
 -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2025. 1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025. 2월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5. 3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행정사항

- 재위탁 보고(안) 의회 제출 : 2025. 1월
-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홍보
 - 홍보실, 정보통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동 및 타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전국 시·군·구로 공문 발송.

[참고 2]

관련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043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25호(2011.4.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78호(2011.9.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110호(2018.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0-20호(2020.2.1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 신청이 있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09. 6. 1.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최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
- 2009.10.19. : 조합설립인가
- 2011. 4.19.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25호)
- 2011. 7. 1. :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 2011. 9.23.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78호)
- 2018.10. 5.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110호)
- 2020. 2.12.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0-20호)
- 2020. 8. 6.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0-129호)
- 2021. 9.15. : 관리처분계획인가(최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57호)
- 2022. 2.~8. : 조합원 이주
- 2023. 1.10. : 사업시행계획인가(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호)
- 2024. 5.~12. :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 2024. 5.2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 2024. 6.~12.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 2025. 1.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인접 상인천초교 시설물(담장) 저축에 따른 소로2-92호선 선형 변경
 - 획지[2]-2(유치원) 폐지에 따른 주차장① 확장 (1,620.5㎡ → 2,069.6㎡)
 - 획지[4]-4(유치원) 폐지에 따른 근린공원① 선형변경(면적변경 없음)
 - 효율적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위해 공공공지 2개소 → 소공원 2개소 변경
 - : 공공공지①(폐지, 495.4㎡) → 소공원②(신설, 495.4㎡)
 - : 공공공지②(폐지, 509.0㎡) → 소공원③(신설, 509.0㎡)
 - 도시계획시설 용지 수요조사결과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부지만 무상귀속)
 -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① (폐지, 1,505.7㎡) → 사회복지시설① (신설, 1,505.7㎡)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획지[1]-1 주용도 변경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획지[2]-2(유치원) 및 획지[4]-4(유치원) 폐지
 - 획지[4]-2(공동주택) 면적 증가 (88,880.7㎡ → 89,594.4㎡)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획지[4]-2 공동주택)
 - 건폐율계획 : 16%이하 → 20%이하
 - 용적률계획 : 275%미만 → 275%이하
- 순부담계획
 - 순부담면적(비율) : 13,372.0㎡(9.70%) → 13,834.8㎡(10.04%)
- 임대주택 계획
 -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영구임대주택 조치계획(市주거정비과-9043(2023.10.25.))’ 반영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향후 일정계획

- 2025.04. :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 2025.0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

□ 참고사항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 [첨부1]

■ 첨부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오류정정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재개발사업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구역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137,852.1	-	137,852.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2018.0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오류정정

3.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신설)

구분	총 수입 (원)	공통부담소요비용 (원)	분양대상토지등의 소유자 중전평가액(원)	추 정 비례율	비 고
내용	946,051,903,050	745,204,183,650	200,847,719,400	100.0%	-

※ 금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는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명 칭			면 적(m ²)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37,852.1	－	137,852.1	100.0
택지	소 계		90,806.6	감) 471.8	90,334.9	65.5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88,880.7	증) 713.7	89,594.4	65.0
	종교시설		392.0	－	392.0	0.3
	근린생활시설		348.4	－	348.4	0.3
	유치원	소 계	1,185.5	감) 1,185.5	－	－
		유치원1	449.1	감) 449.1	－	－
		유치원2	736.4	감) 736.4	－	－
정비 기반 시설 및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47,045.5	증) 471.8	47,517.3	34.5
	도 로		9,971.2	증) 22.7	9,993.9	7.2
	주차장	소 계	3,014.6	증) 449.1	3,463.7	2.5
		주차장1	1,620.5	증) 449.1	2,069.6	1.5
		주차장2	1,394.1	－	1,394.1	1.0
	공원	소 계	31,549.6	증) 1,004.4	32,554.0	23.6
		근린공원	23,942.9	－	23,942.9	17.4
		어린이공원	4,420.4	－	4,420.4	3.2
		소공원1	3,186.3	－	3,186.3	2.3
		소공원2	－	증) 495.4	495.4	0.4
		소공원3	－	증) 509.0	509.0	0.4
		공공 공지	소 계	1,004.4	감) 1,004.4	－
		공공공지1	495.4	감) 495.4	－	－
		공공공지2	509.0	감) 509.0	－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1,505.7	－	1,505.7

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852.1	-	137,852.1	100.0	-

2) 용도지구(해당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정비구역 내 일반미관지구 폐지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폐 지	21	구월녹지 (공원)동측	일반 미관지구	대3-13	12,000	800	편측 15	인고 제109호 (`99.9.9)	주거지역 내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변경)

1) 도로(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8~13	국지도로	195 (157)	중3-47	소2-9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6	8~17	국지도로	42 (5)	소1-15	간석동 452-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51	8~17	국지도로	25 (3)	소1-15	간석동 455-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53	6~16	국지도로	39 (12)	소1-16	간석동 336-1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390	20	국지도로	140 (140)	대3-13	간석동 426-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419	12	국지도로	377 (377)	소3-138	소1-1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9	10~11	국지도로	50 (26)	대1-1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13	25~30	보조간선	3,150 (203)	대1-14 간석동	대2-7 문학동	일반 도로	-	인고 제1063호 (1987.1.8.)	주요폭원 : 25m
기정	소로	1	11	10~12	국지도로	145 (101)	대3-13	간석동 427-3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423	간석동 419-11	대2-3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23	8	국지도로	61	간석동 339-5	소1-1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76	8~12	국지도로	85 (59)	소1-11	중1-39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92	8~12	국지도로	329 (274)	대1-2	소3-15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92	8~12	국지도로	329 (274)	대1-2	소3-154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주요폭원 : 12m
기정	소로	3	137	6	국지도로	49 (15)	대1-1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38	6	국지도로	60	대3-13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40	6	국지도로	34 (4)	중3-47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54	6~12	국지도로	139 (32)	소2-84	소1-16	일반 도로	-	-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조서 참조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92	소로 2-92	• 선형변경(주요폭원 12m)	• 정비구역에 인접한 상인천초등학교 시설물(담장)과 소로2-92호선이 저촉되어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2) 주차장(교통시설)(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①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1,620.5	증) 449.1	2,069.6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기 정	②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4.1	-	1,394.1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선형변경 : 1,620.5㎡→2,069.6㎡(증 449.1㎡)	• 연접한 획지②-2(유치원) 계획폐지에 따른 주차장 확장

3) 공원(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①	공 원	근린 공원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42.9	—	23,942.9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기 정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20.4	—	4,420.4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기 정	①	공 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6.3	—	3,186.3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신 설	②	공 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	증) 495.4	495.4	—	무상 귀속
신 설	③	공 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	증) 509.0	509.0	—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 원	근린 공원	• 선형변경	• 연접한 획지 4-4(유치원) 폐지에 따른 공원 선형변경
②	공 원	소공원	• 신설 : 495.4㎡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③	공 원	소공원	• 신설 : 509.0㎡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4) 공공공지(공간시설)(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 지	①	공공공지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감) 495.4	—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폐 지	②	공공공지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감) 509.0	—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 폐지 : 495.4m ²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②	공공공지	• 폐지 : 509.0m ²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5)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변경)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공문화·사회 복지시설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감) 1,505.7	-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부지만 무상 귀속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 폐지 : 1,505.7m ²	•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폐지

6) 사회복지시설(신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①	사회복지시설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	증) 1,505.7	1,505.7	-	부지만 무상 귀속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사회복지시설	• 신설 : 1,505.7m ²	•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신설)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 구역	137,852.1	획지 ①-1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1,505.7	공공문화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획지 ②-1 (주차장)	1,620.5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 ②-2 (유치원)	449.1	아동관련 시설(유치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 ④-2 (공동주택)	88,880.7	공동주택 부대복지시설	16% 이하	275% 미만	121m 이하
		획지 ④-4 (유치원)	736.4	아동관련 시설(유치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 ④-5 (주차장)	1,394.1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 ⑤-2 (종교시설)	392.0	종교집회장 (교회)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 ⑤-4 (근린생활시설)	348.4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구 분		계획내용			
		획지 ①-1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지정용도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②-1 (주차장)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 ②-2 (유치원)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유치원)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④-2 (공동주택)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 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구역 구분		구 분		계획내용			
명칭	면적(㎡)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 구역	137,852. 1	획지 ④-4 (유치원)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유치원)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④-5 (주차장)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 ⑤-2 (종교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⑤-4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계획 -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 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 한계선	획지①-1		도로변	폭 3m 지정
				획지②-2		도로변	폭 1.5m 지정
				획지④-2		도로변	폭 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획지④-4	도로변	폭 1.5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 용적률 완화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3.95% [1.5 × (21,327.6 ÷ 90,785.5) × 210%] + 지하주차장계획 10% = 293.95% (계획용적률 275% 미만)						

○ 변 경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137,852.1	획지 ①-1 (사회복지시설)	1,505.7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획지 ②-1 (주차장)	2,069.6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 ④-2 (공동주택)	89,594.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75% 이하	121m 이하
		획지 ④-5 (주차장)	1,394.1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 ⑤-2 (종교시설)	392.0	종교집회장 (교회)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 ⑤-4 (근린생활시설)	348.4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①-1 (사회복지시설)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②-1 (주차장)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 ④-2 (공동주택)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④-5 (주차장)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 ⑤-2 (종교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⑤-4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 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폭 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4]-2	도로변	폭 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공공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영구임대주택 조치계획(市주거정비과-9043(2023.10.25.))’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 용적률 완화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5.75%[1.5 × (21,724.5 ÷ 90,334.8) × 210%] + 지하주차장계획 10% = 295.75% (계획용적률 275% 이하)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분	항 목	환경성 예측	저감방안
자연환경	기상 · 기후 및 에너지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 기온 12.63℃, 강수량 1,317.17mm,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계열 - 전력사용 예측: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이용에 따른 에너지 및 도시가스 사용 - 포장화에 따른 열섬효과 증가예상 - 건축물 설치에 따른 일조 상의 저해현상 발생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 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으로 교통수송시설의 연료사용량 최소화
	지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계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경관	- 공사 시 일시적인 경관 악영향 발생 - 운영 시 경관변화 발생	조화로운 건축물 계획 등으로 경관영향 최소화

구분	항 목	환경성 예측	저감방안
생활환경	대기질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 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질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탐부하 증가 예상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용수사용 및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 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계획 -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탐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2009년 완공되는 만월산배수지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좌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할 예정
	폐기물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진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 예상 -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 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고려

나. 재난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재계획을 수립	-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 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상인천초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유색포장 및 미끄럼방지 시설, 험프,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설치 계획 수립	-

10.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 제52조제1항제3호 관련)

조합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조합은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한다.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관련)

- 영업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상가면적 평당 기준 추정 손실보상비 책정
- 주거이전비를 원하는 세대와 세대원의 수 등에 한하여 지급 예정

세입자 총 가구수	임대주택 공급신청 가구수	대 책 별 현 황 (단위 : 가구수)						비고
		임대주택 공 급	주거이전비지급 (상가포함)	무 대 책 (유형별)				
				계	위장 세입자	상가 세입자	주거기간미달 (임대/이전비신청)	
603	68	63	603	—	—	—	—	—

1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범위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12.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852.1	—	137,852.1	100.0	—

2) 용도지구(해당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8-346호(2018.12.31.))” 에 따른 정비구역 내 일반미관지구 폐지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폐 지	21	구월녹지 (공원)동측	일반 미관지구	대3-13	12,000	800	편측 15	인고 제109호 (`99.9.9)	주거지역 내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변경)

1) 도로(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8~13	국지도로	195 (157)	중3-47	소2-9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6	8~17	국지도로	42 (5)	소1-15	간석동 452-1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1	8~17	국지도로	25 (3)	소1-15	간석동 455-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53	6~16	국지도로	39 (12)	소1-16	간석동 336-1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390	20	국지도로	140 (140)	대3-13	간석동 426-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419	12	국지도로	377 (377)	소3-138	소1-1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9	10~11	국지도로	50 (26)	대1-1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3	13	25~30	보조간선	3,150 (203)	대1-14 간석동	대2-7 문학동	일반 도로	-	인고 제1063호 (1987.1.8.)	주요폭원 : 25m
기정	소로	1	11	10~12	국지도로	145 (101)	대3-13	간석동 427-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423	간석동 419-11	대2-3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23	8	국지도로	61	간석동 339-5	소1-1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76	8~12	국지도로	85 (59)	소1-11	중1-39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92	8~12	국지도로	329 (274)	대1-2	소3-15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92	8~12	국지도로	329 (274)	대1-2	소3-154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주요폭원 : 12m
기정	소로	3	137	6	국지도로	49 (15)	대1-1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38	6	국지도로	60	대3-13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40	6	국지도로	34 (4)	중3-47	중3-41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54	6~12	국지도로	139 (32)	소2-84	소1-16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92	소로 2-92	• 선형변경(주요폭원 12m)	• 정비구역에 인접한 상인천초등학교 시설물(담장)과 소로2-92호선이 저촉되어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2) 주차장(교통시설)(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①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1,620.5	증) 449.1	2,069.6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기 정	②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4.1	-	1,394.1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선형변경 : 1,620.5㎡→2,069.6㎡(증 449.1㎡)	• 연접한 획지②-2(유치원) 계획폐지에 따른 주차장 확장

3) 공원(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①	공 원	근린 공원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42.9	-	23,942.9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기 정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20.4	-	4,420.4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기 정	①	공 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6.3	-	3,186.3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신 설	②	공 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	증) 495.4	495.4	-	무상 귀속
신 설	③	공 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	증) 509.0	509.0	-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 원	근린 공원	• 선형변경	• 연접한 획지 ④-4(유치원) 폐지에 따른 공원 선형변경
②	공 원	소공원	• 신설 : 495.4㎡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 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③	공 원	소공원	• 신설 : 509.0㎡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 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4) 공공공지(공간시설)(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 지	①	공공공지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감) 495.4	-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폐 지	②	공공공지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감) 509.0	-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 폐지 : 495.4㎡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②	공공공지	• 폐지 : 509.0㎡	•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5)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변경)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감) 1,505.7	-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부지만 무상 귀속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 폐지	•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폐지

6) 사회복지시설(신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①	사회복지시설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	증) 1,505.7	1,505.7	-	부지만 무상 귀속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사회복지시설	• 신설	•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신설)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결 정 구 분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①	1,505.7	①-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②	2,069.6	②-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1,620.5		노외주차장
			②-2	남동구 간석동 433-7번지 일원	449.1		아동관련시설 (유치원)
	③	3,186.3	③-1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6.3		소공원
	④	119,374.5	④-1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20.4		어린이공원
			④-2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88,880.7		공동주택/ 부대복지시설
			④-3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42.9		근린공원
			④-4	남동구 간석동 339-3번지 일원	736.4		아동관련시설 (유치원)
			④-5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4.1		노외주차장
	⑤	1,744.8	⑤-1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공공공지
			⑤-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392.0		종교집회장(교회) (존치)
			⑤-3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공공공지
			⑤-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348.4		근린생활시설
변경	①	1,505.7	①-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	사회복지시설
	②	2,069.6	②-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2,069.6		노외주차장
	③	3,186.3	③-1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6.3		소공원1
	④	119,351.8	④-1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20.4		어린이공원
			④-2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89,594.4		공동주택/ 부대복지시설
			④-3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42.9		근린공원
			④-5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4.1		노외주차장
	⑤	1,744.8	⑤-1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소공원2
			⑤-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392.0		종교집회장(교회) (존치)
			⑤-3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소공원3
			⑤-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348.4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면적 : 1,505.7㎡)	지정용도 (주용도)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40m 이하
		층수	• 10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4,517㎡ 이하
		건축선	• 도로변으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②-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면적 : 1,620.5㎡)	지정용도 (주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이	• 40m 이하
		층수	• 10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24,307㎡ 이하
		건축선	-
②-2	남동구 간석동 433-7번지 일원 (면적 : 449.1㎡)	권장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유치원)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하
		층수	• 5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1,347㎡ 이하
		건축선	• 도로변으로부터 1.5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④-2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면적 : 88,880.7㎡)	지정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6% 이하
		용적률	• 275% 미만
		높이	• 121m 이하
		층수	• 35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244,421㎡ 이하
		건축선	• 도로변 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④-4	남동구 간석동 339-3번지 일원 (면적 : 736.4㎡)	권장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유치원)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하
		층수	• 5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2,209㎡ 이하
④-5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면적 : 1,394.1㎡)	지정용도 (주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이	• 40m 이하
		층수	• 10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20,911㎡ 이하
		건축선	-
⑤-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면적 : 392.0㎡)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하
		층수	• 5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1,176㎡ 이하
		건축선	-
⑤-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면적 : 348.4㎡)	권장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40m 이하
		층수	• 10층 이하
		연면적	• 지상연면적 1,045㎡ 이하
		건축선	-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면적 : 1,505.7㎡)	지정용도 (주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40m 이하
		건축선	• 도로변으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②-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면적 : 2,069.6㎡)	지정용도 (주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이	• 40m 이하
		건축선	—
④-2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면적 : 89,594.4㎡)	지정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75% 이하
		높이	• 121m 이하
		건축선	• 도로변 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④-5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면적 : 1,394.1㎡)	지정용도 (주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이	• 40m 이하
		건축선	—
⑤-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면적 : 392.0㎡)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하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5]-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면적 : 348.4㎡)	권장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40m 이하
		건축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9.02.06.)」 반영에 따른 연면적, 층수계획 삭제

1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없음)

16.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해당없음)

1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

1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준치	개수	철거	
기정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구역	137,852.1㎡	528	2	—	526	—

1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변경)” 참조

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2]-2 및 획지[4]-4 폐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규 모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기 정	획지[1]-1	도로변	폭 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획지[2]-2	도로변	폭 1.5m 지정		
	획지[4]-2	도로변	폭 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획지[4]-4	도로변	폭 1.5m 지정		
변 경	획지[1]-1	도로변	폭 3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획지[4]-2	도로변	폭 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2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나. 재난방지계획(변경없음)” 참조

2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사업추진단계	비 고
백운주택 1구역	간석동 900-138번지일원	32,366.5	249.85%	746세대	부분준공 (2024.06.21.)	-
간석성락 아파트구역	간석동 514번지일원	20,682.9	249.86%	469세대	착공 (2022.04.15.)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구월동 70-16번지일원	55,771.3	236.51%	1,115세 대	이전고시 (2024.10.08.)	-

2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이주철거 이전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
이주철거 이후	• 구역 내 주요 지점에 경비인력이 상주 할 수 있는 순찰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 차단 • 이주 철거계획 수립 시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주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 공가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함	-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2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m ²)		
기정	①	1,505.7	①-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②	2,069.6	②-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1,620.5		노외주차장
			②-2	남동구 간석동 433-7번지 일원	449.1		아동관련시설 (유치원)
	③	3,186.3	③-1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6.3		소공원
	④	119,374.5	④-1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20.4		어린이공원
			④-2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88,880.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④-3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42.9		근린공원
			④-4	남동구 간석동 339-3번지 일원	736.4		아동관련시설 (유치원)
			④-5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4.1		노외주차장
	⑤	1,744.8	⑤-1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공공공지
			⑤-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392.0		종교집회장(교회) (존치)
			⑤-3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공공공지
			⑤-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348.4		근린생활시설
변경	①	1,505.7	①-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	사회복지시설
	②	2,069.6	②-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2,069.6		노외주차장
	③	3,186.3	③-1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6.3		소공원1
	④	119,351.8	④-1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20.4		어린이공원
			④-2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89,594.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④-3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42.9		근린공원
			④-5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4.1		노외주차장
	⑤	1,744.8	⑤-1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소공원2
			⑤-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392.0		종교집회장(교회) (존치)
			⑤-3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소공원3
			⑤-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348.4		근린생활시설

25.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임대주택 → 변경)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공공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	--

※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영구임대주택 조치계획(市주거정비과-9043(2023.10.25.))'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2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7.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8.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 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40주	정비구역 내 기존 수목 : 40주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29.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해당없음)

30.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	중로3-419, 소로1-13, 소로1-9, 소로2-92, 소로3-137, 소로3-138, 소로3-140호선 변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세가로 접촉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기결정 사항 오기정정

나. 대지 내 공지계획(변경)

- 획지[1]-1 주용도 변경(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 정	-	획지[1]-1(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대지 안의 공지(도로변 폭3m)	• 보도형 전면공지 지정 - 공공을 위한 보행공간으로 사용	-
변 경	-	획지[1]-1(사회복지시설) 대지 안의 공지(도로변 폭3m)		-

다. 보행축 확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남북간 보행자 통행축을 확보하여 단지계획 수립

라. 시행자부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상인천초등학교 부지와 상인천초교주변구역의 단차로 인한 학교 경계부의 옹벽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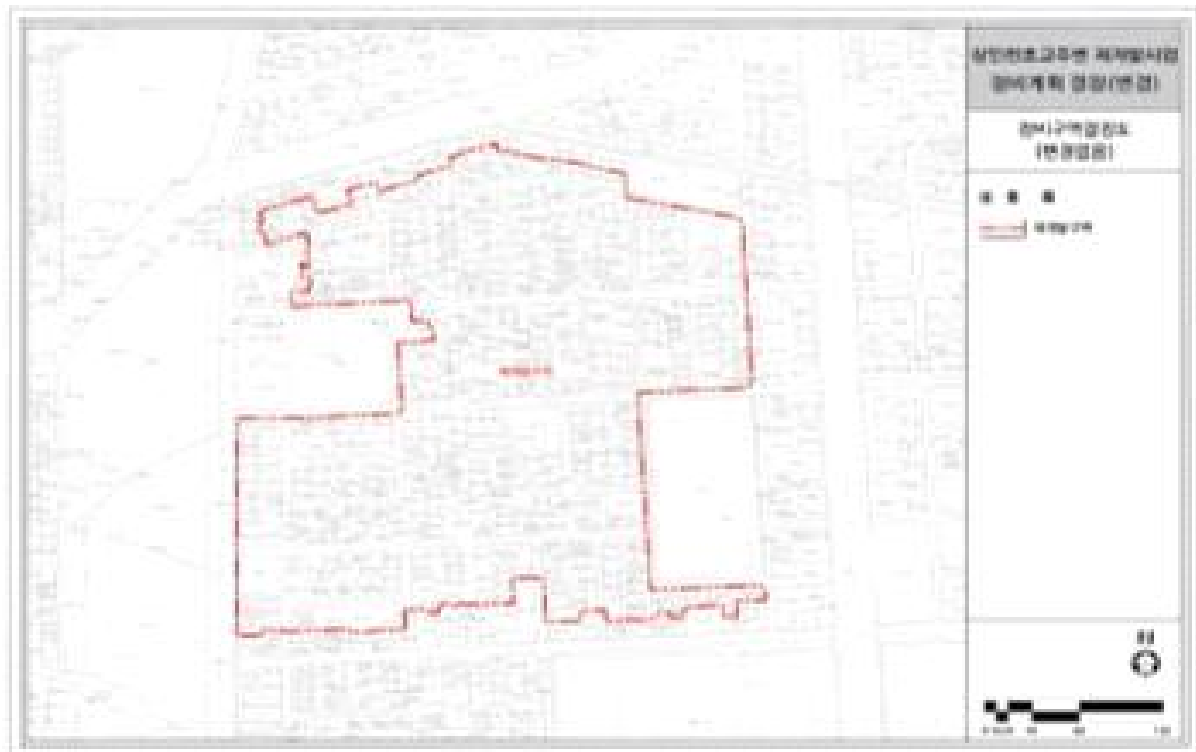
마.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계획(변경)

구 분	내 용
기 정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09.1.13.)’상의 순부담 요건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변 경	•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구역은 남동구 고시 제2023-3호(2023.01.10.)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구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한 무상양도 토지면적 산정시 관리청 협의 결과를 반영 •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18.11.28.)’상의 순부담 요건에 미충족할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을 추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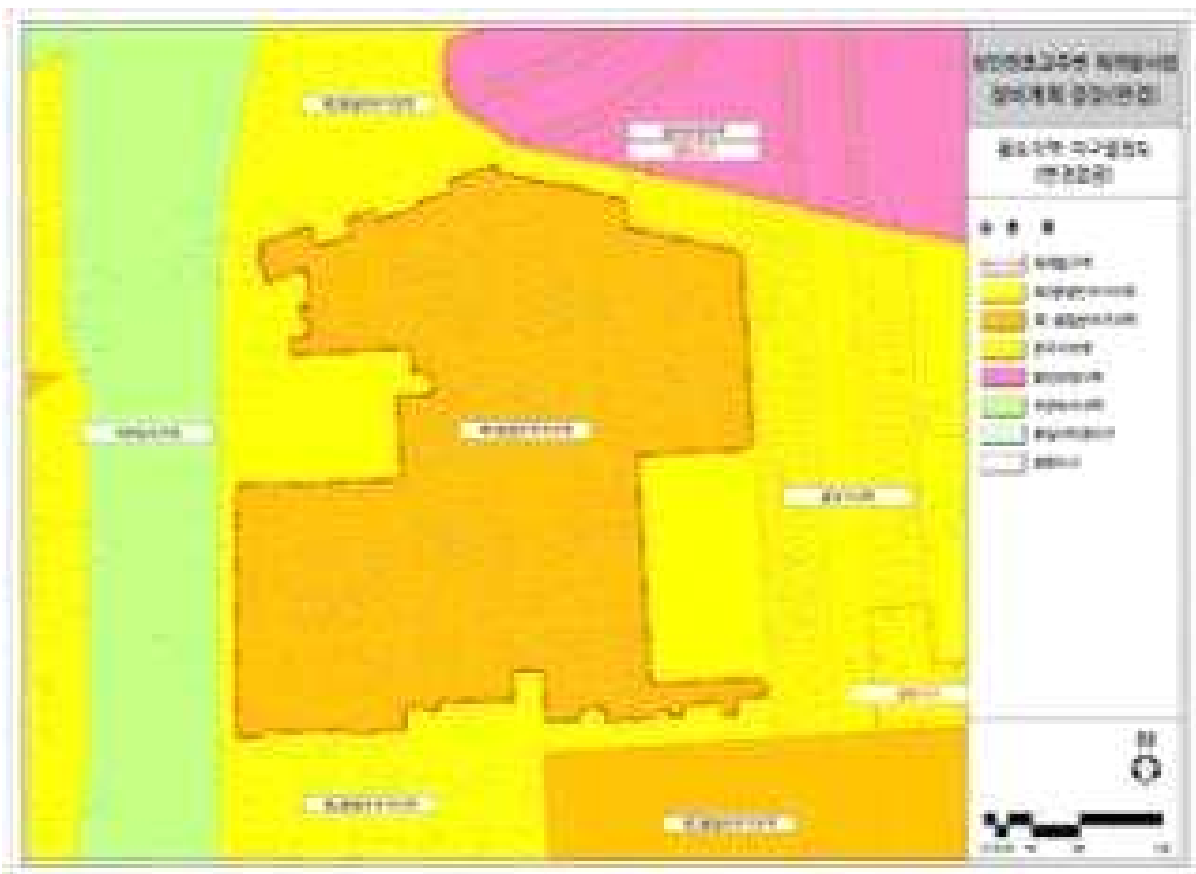
[위치도]



[정비구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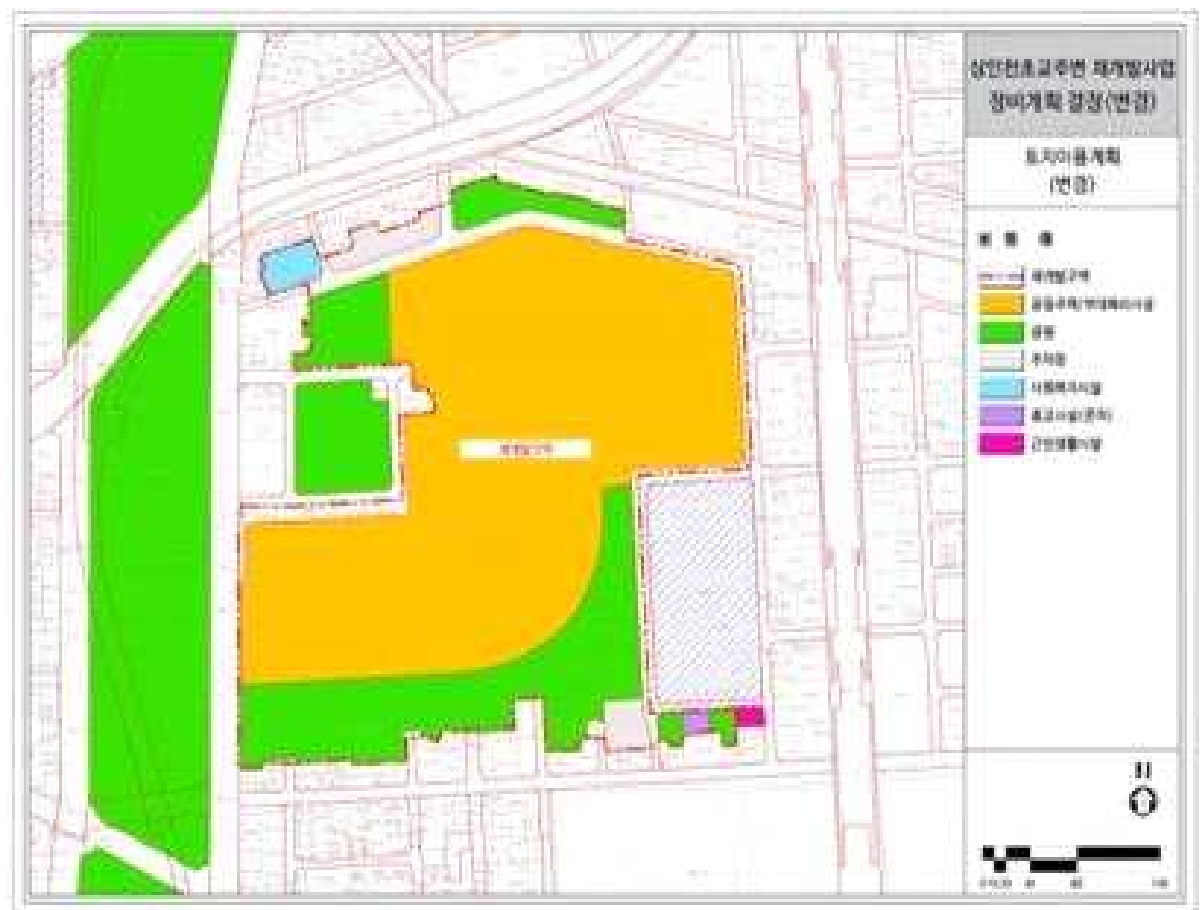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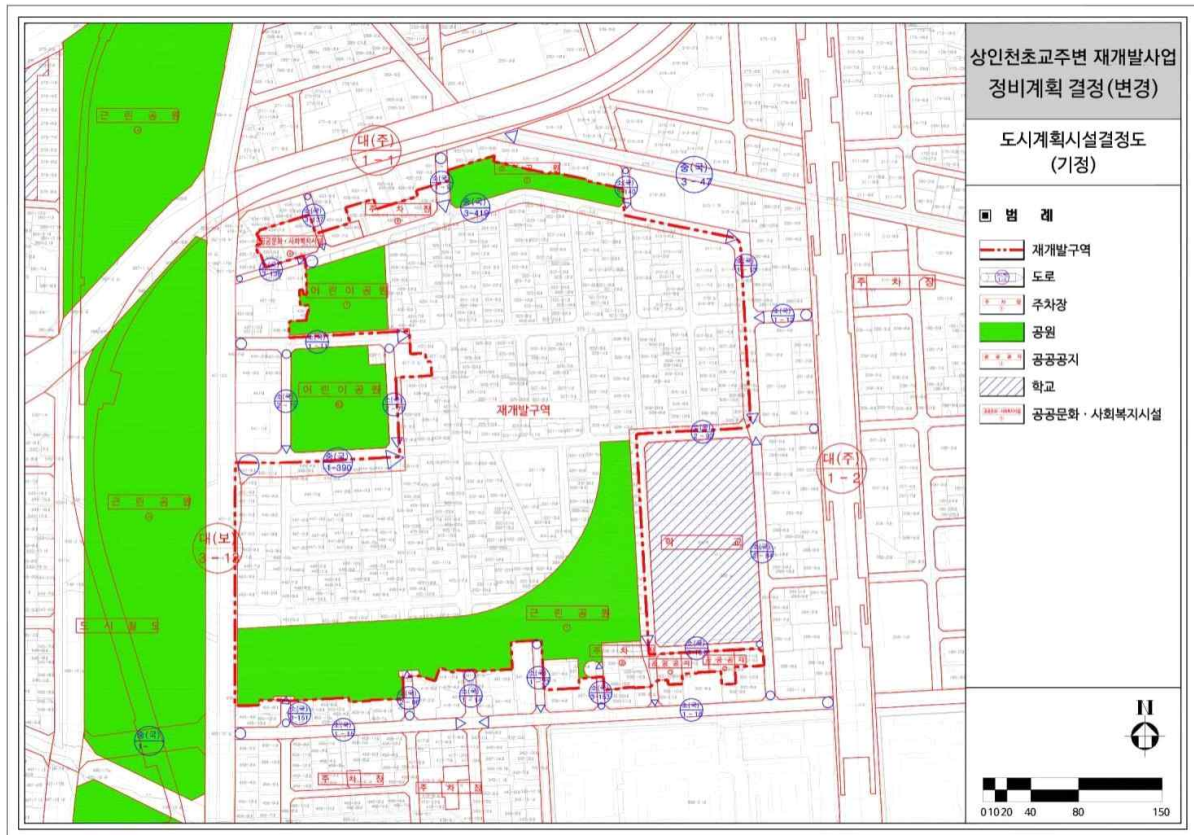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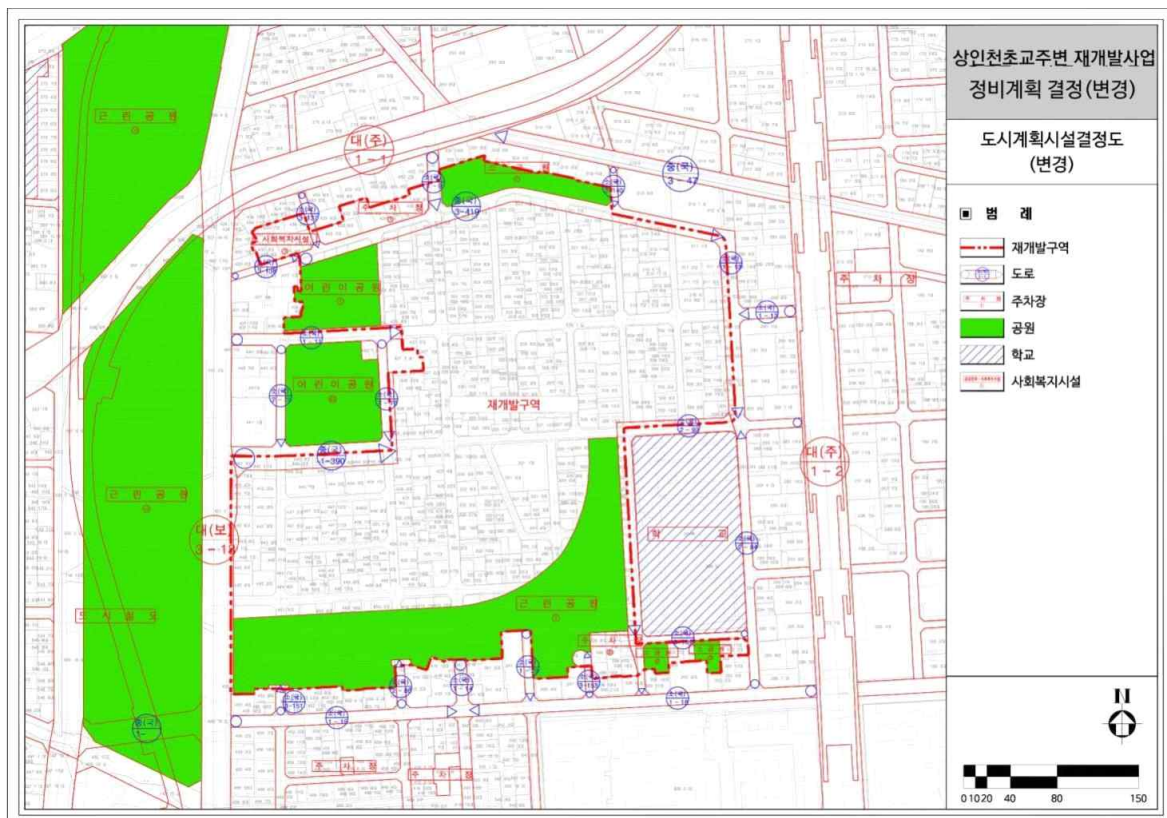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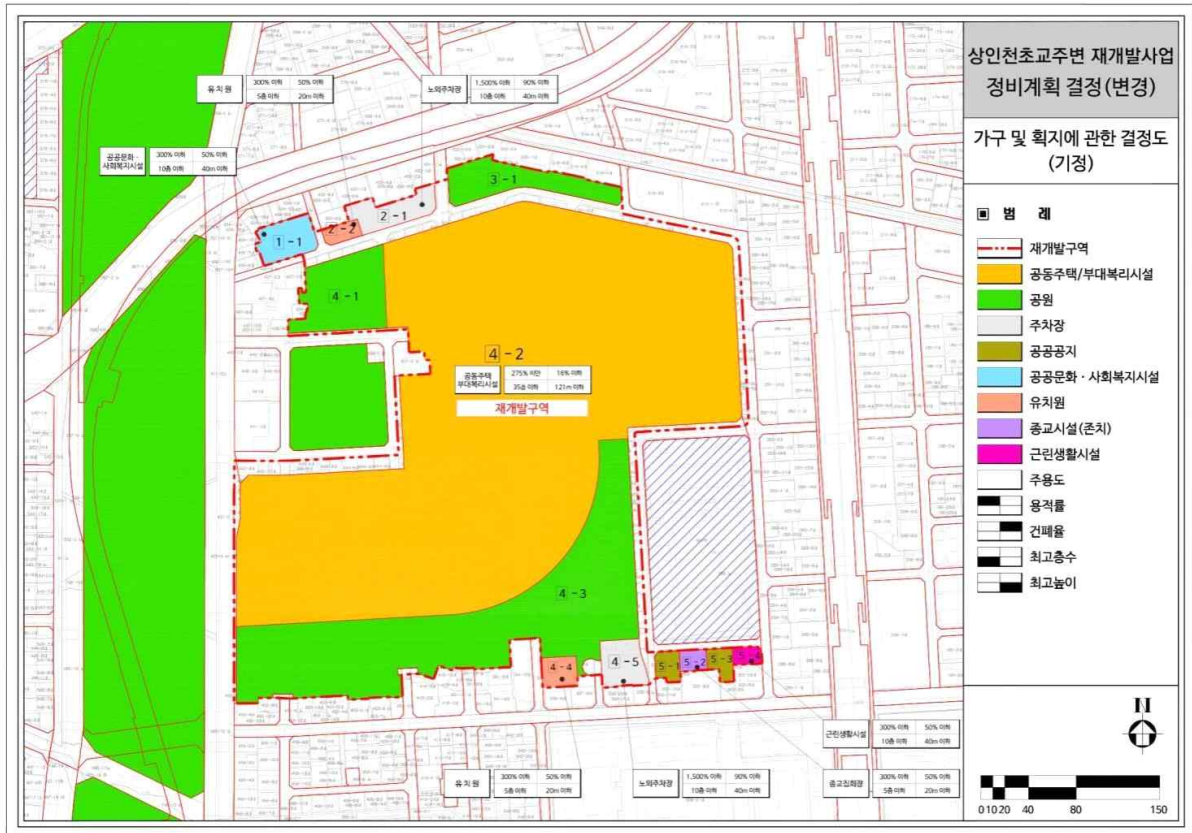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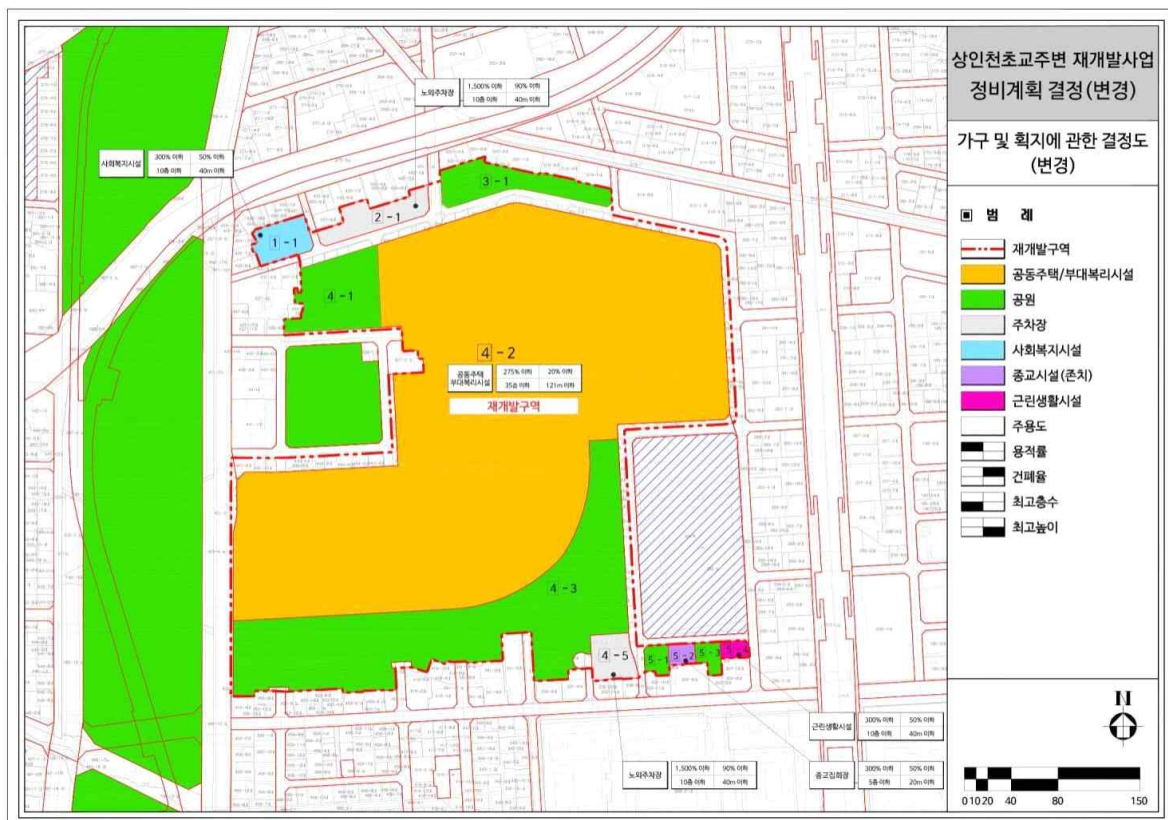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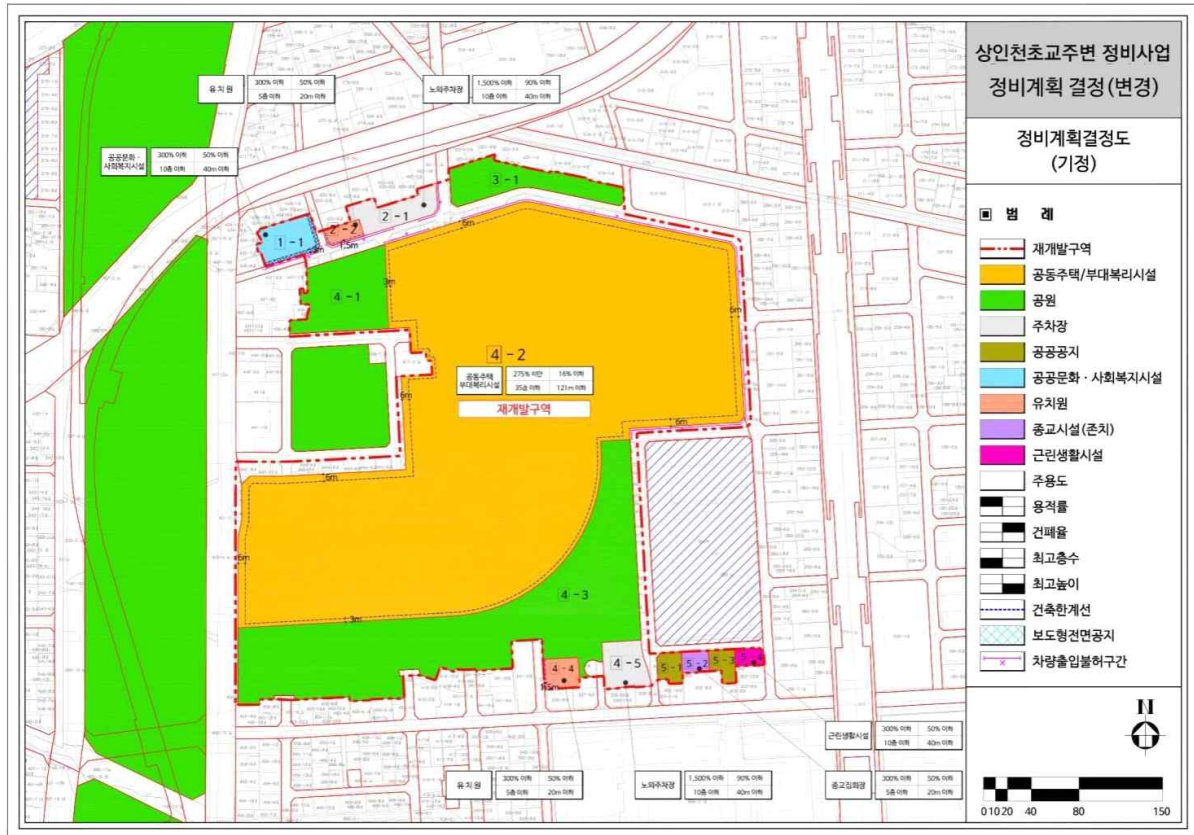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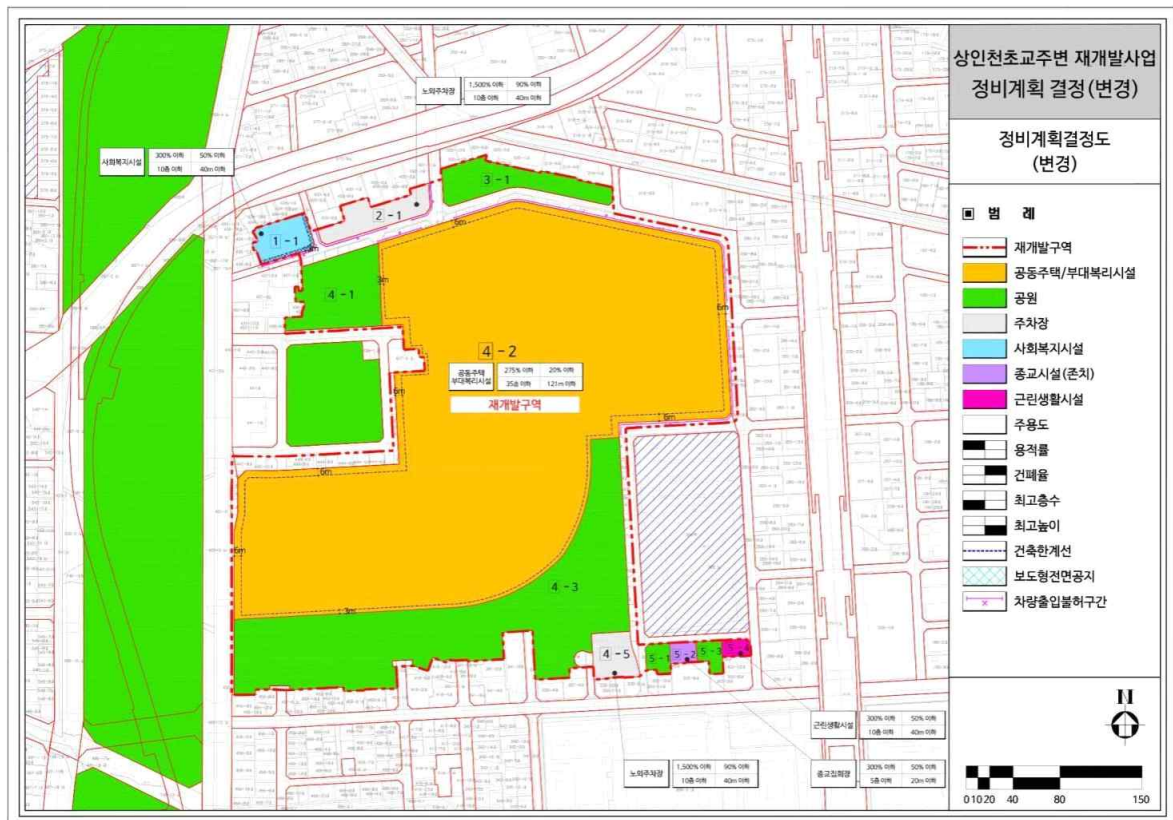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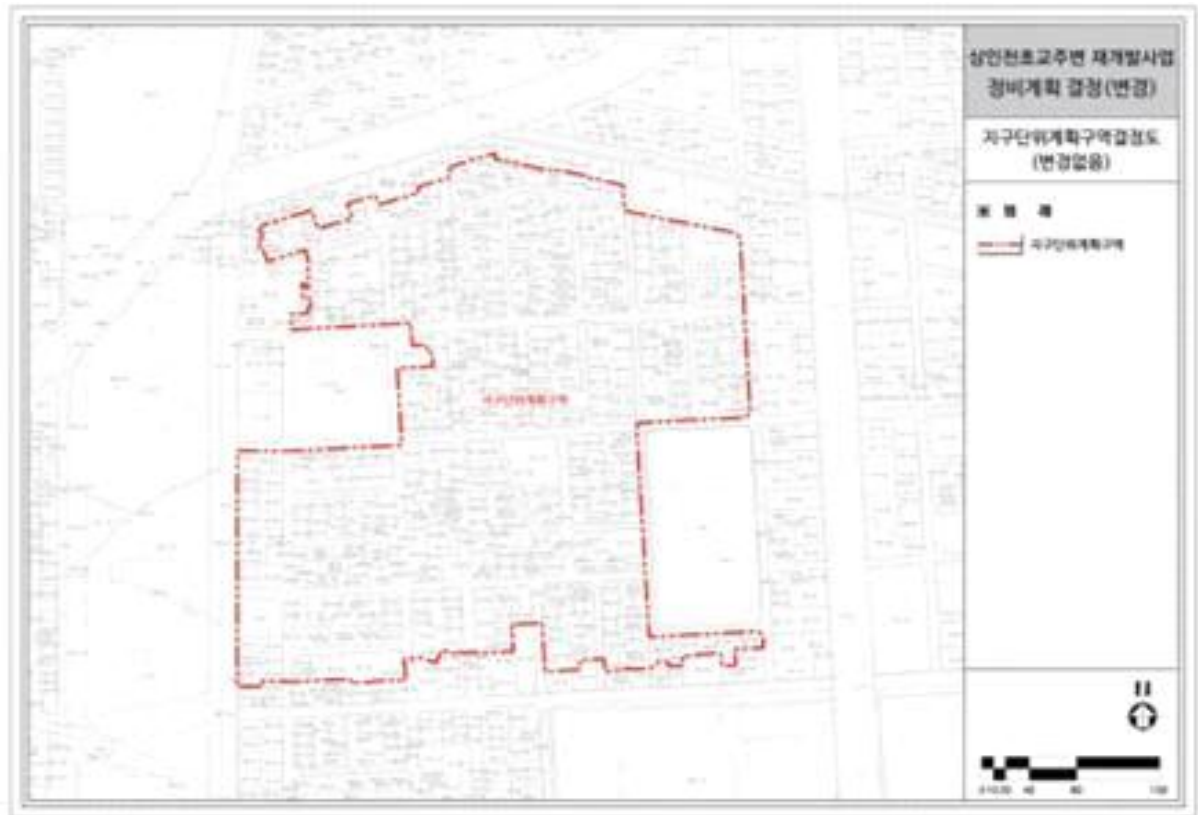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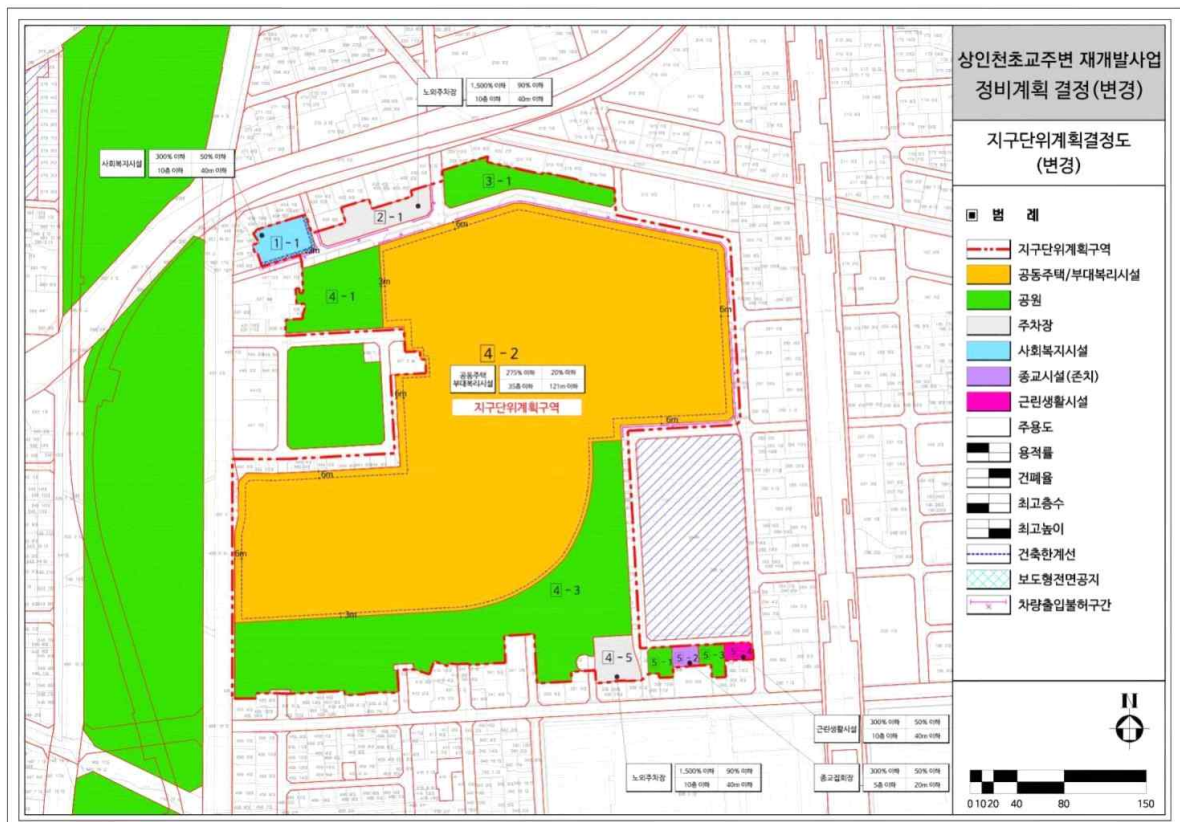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 보고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 보고안

의안
번호

3044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표를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세부 추진과제(성과지표) 변경
 - (전)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개소
 - (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
-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
 -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 임산부 등록률 조정

☐ 본 문 : “별첨”☐ 참고 자료

- 「지역보건법」 제7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 정 식

[관련 법률]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의안 번호	3045
----------	------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23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연차별 이행력을 확보하고,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 제8기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 제8기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활동

☐ 본 문 : “별첨”

☐ 참고 자료

- 「지역보건법」 제7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 정 식

[관련 법률]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199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청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 복사용지(A4 1매당) : 80원 ○ 라벨용지(A4 1매당) : 220원	○ USB(6,000원) + (30원×면수) ※ 신청인이 USB 등 별도 저장매체 제출 시 매체비용 무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5-200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면제 방식의 추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청사의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면제 대상 정비 및 규정 신설(안 제5조)
- 나. 최초 입차 후 주차요금 무료시간 변경(안 제6조)
- 다. 월 정기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일부 삭제(안 제7조)
- 라. 인용법령의 제명 등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032-453-2185, FAX 032-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주차요금 면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법규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요금 면제 대상 및 용어 정비 : (안 제5조)
- 최초 입차 후 주차요금 무료시간 변경 : (안 제6조)
- 주차요금 면제 방식 추가 : (안 제7조)
-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의 개정사항 반영 : (안 제8조)
- 인용규정의 변경 및 조문 정비 :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상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로, “다른 지방의회 의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용 자동차
5.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회의·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
6. 구의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목적에 따라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별지 제1호서식”을 “방문부서에서 해당 자동차등록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차관제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1시간”을 “2시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남동구의회의 의원, 사회복지무요원·입주기관”을 “공무원, 사회복지무요원, 입주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증서”를 “국가보훈등록 증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한” 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으로, “5·18민주유공자” 를 “국가보훈등록”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증서” 를 “국가보훈등록 증서”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를 “납입고지서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해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주차장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 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 다. 1. <u>공용자동차(자동차에 공용자 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 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정 함)</u> 2. (생략) 3. <u>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민 원인 주차 자동차</u> 4. <u>공무상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그 보 좌진의 자동차</u> <u><신 설></u>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 ----- ----- ----- ----- ----- ----- ----- ----- -----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용 자동차</u>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u>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 ----- 지방의회 의원----- ----- -----</u> 5. <u>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교육 · 회의 · 행사 참석을 위해 방</u>

5. (생략) 6. <u>각종 회의·위원회 참석 및 구 주관 행사 초청대상 등 공적인 업무로 구를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u> 7. <u>구 주관 행사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출연진 이용 자동차</u> 8. <u>구 주관 교육을 수강 및 강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u> 9. ~ 11. (생략) ② <u>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확인서를 방문부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량의 면제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주차할인권(바코드 등) 등을 이용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	<u>문한 사람의 자동차</u> 3. (현행 제5호와 같음) 6. <u>구의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목적에 따라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u> <삭제> <삭제> 7. ~ 9.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u>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방문부서에서 해당 자동차등록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차관제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u>. -----. ③ -----
---	--

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주차관제시스 템을 통해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주차요금) ① 자동차가 주 차장에 들어온 최초 1시간은 무 료로 하고, 무료시간이 경과한 최초 30분은 기본요금 600원을 징수하며, 그 후 매 15분마다 30 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5 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 차로 보아 주차요금은 6,000원 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 ① ----- ----- 2시간-----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	제7조(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
① 제2조에 따른 공공청사 등에 상시 출입하는 구 소속 공무원 · 남동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요 원 ·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무 원 등”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월 정기자동 차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 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 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또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	① ----- -----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입주기관 ----- ----- ----- ----- ----- ----- ----- ----- ----- -----

제(이하 “부제”라 한다)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② (생략)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월 정기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와 제8 조제2항에 따라 감경하는 자동 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 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u>국가 유공자 증서</u>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2. (생략)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 유의증환자로서 <u>국가보훈처장 이 발급한 표지(스티커)</u>를 자 동차에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 ----- <u>국가 보훈등록 증서</u>----- ----- 2. (현행과 같음) 3. ----- ----- ----- <u>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훈등록 증서를 소지한</u> ---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	--

<u>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u> <u>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u> <u>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u> <u>따른 5·18민주유공자</u>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 령 제86조에 따른 <u>보훈보상대</u> <u>상자 증서</u>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 8. (생 략) 제11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 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고, 다음 업무개시 일 즉시 「<u>남동구 회계관리에</u> <u>관한 규칙</u>」에서 정하는 <u>세입세</u> <u>출외현금 납입고지서</u>에 따라 구 <u>금고에 납입하여야</u> 한다. ② (생 략)	<u>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u> <u>조제2호</u>----- <u>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u> <u>항</u>----- -- <u>국가보훈등록</u> -- 5. ----- ----- ----- ----- <u>국가보훈등</u> <u>록 증서</u>----- ---- 6.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 -----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u> <u>리에 관한 훈령</u>」----- <u>납입고</u> <u>지서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해야</u> -----. ② (현행과 같음)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고지서 등) ① 고지서 등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 ② 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 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호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공공기관 협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전유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4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전유형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공공기관 협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 나. 남동구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 라.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

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및 제9조(포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및 포상은 연 평균 1천만원 미만 소요 예상되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기에 미첨부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참고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호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안 제4조)
-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5조)
- 생활악취 대응 지침(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5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안 제4조)
-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5조)
- 생활악취 대응 지침(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악취방지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제5조(생활악취 실태조사)
-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생활악취 저감·관리에 필요한 시책 및 생활악취 대응 지침 수립 시 1억 5천만원 미만의 한시적 경비로 예상되며, 생활악취 실태조사 등 필요한 경비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 그 외 생활악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등을 구체화 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참고자료]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호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놀이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리계획 및 안전·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조치, 행위 제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6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놀이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리계획 및 안전·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조치, 행위 제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남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무장애 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3. 통합놀이터의 무장에 시설 확충 및 보수

4.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노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통합놀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설치·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2조(통합놀이터의 설치)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 제6조(조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참고자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호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7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9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가 구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따른 예상 발생 비용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19. (생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이하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5호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K-푸드 진흥, 대체식품 개발, 식문화 혁신 등을 도모하고, 식품 및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비전 있는 식품 산업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및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8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K-푸드 진흥, 대체식품 개발, 식문화 혁신 등을 도모하고, 식품 및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비전 있는 식품 산업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및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식품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IT(정보기술)·BT(바이오테크놀로지)·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

립할 수 있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
5.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관·학·연 등과의 협력방안
6. 푸드테크를 통한 대체식품 개발, 스마트농장 운영 등 지역연계 활용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2. 푸드테크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위생·음식문화 개선 교육
4. 푸드테크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남동구의회의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5조(사업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향후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재정이 수반될 수 있으나,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유동적이므로 비용추계가 불가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참고자료]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25., 2011. 7. 21., 2011. 11. 22., 2012. 6. 1.,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20. 2. 18., 2020. 8. 11., 2020. 12. 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6호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9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남동구 도로관리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보도 내 점자블럭 정비 및 관리 등 사업비 발생

나. 관련 조문(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점자블럭 정비 사업비(2022년~2024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사 업 비	41,000	74,000	14,000	129,000

※ 3개년도 평균 사업비: 약 43,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사 업 비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비 100% 편성 필요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참고

4. 부대의견

- 추후 실제 사업 규모 및 대상지 여건에 따른 비용산출 필요

작성자 : 도시국 도로과장 윤성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6년)	2차년도 (27년)	3차년도 (28년)	4차년도 (29년)	5차년도 (30년)	계
세 입							
세 출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보도 및 점자블럭 설치 및 정비사업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채원 조달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への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7호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도로에 설치된 맨홀 및 기타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작업구의 긴급정비, 기존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60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도로에 설치된 맨홀 및 기타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작업구의 긴급정비, 기존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로법」 제2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날짜,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구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

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도시국 도로과장 윤성민

[참고자료]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정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4. “작업구 본체”란 작업구 자체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이전포함)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 작업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작업구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책임)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작업구 높이조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 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주요 업무) ① 작업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
2. 작업구에 대한 사건과 사고 발생 시 대응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6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③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작업구 종류, 설치일자, 현장사진
2. 작업구 설치 위치(도로 등급, 노선·도로명, 주소(주변건물), 차도·보도 여부 등)
3. 작업구 뚜껑구조(형태, 규격, 재질 등)
4. 작업구 상태점검 결과(점검종류, 점검일자, 점검결과 등)
5.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제7조(작업구 설치) 작업구의 구조, 시공, 유지보수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업구의 모양은 미관을 고려하여 도형 또는 구형으로 계획하여 설치한다.
2. 작업구의 본체는 각종 하중차량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작업구 뚜껑은 철근, 철강, 강판, 비철금속, 플라스틱류, 유리섬유류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품(「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작업구 뚜껑의 기능에 안전한 조달 인증제품으로서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명시된 고도기술·일반기술 인증제품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보도, 법면 또는 중차량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제품(공장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작업구 위로 차량 통행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 탄력성 재료로 뚜껑과 뚜껑받이가 밀착되도록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작업구 본체와 맨홀 뚜껑받이는 상호 분리된 구조로하여 요철 발생시 정형이 가능하게 한다.
 6. 작업구 뚜껑에는 작업구의 종류와 관리기관을 표기한다.
 7.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특수공법으로 시공하고 특수자재 등을 사용한다. 다만, 자재수급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법 또는 자재의 종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작업구는 보도, 법면 또는 길어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작업구 본체는 도로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10. 도로포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구 뚜껑은 최소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11. 작업구 설치로 인하여 도로에 요철이 없도록 다짐을 충분히 하여 노면의 높이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평탄성 기준을 충족 하도록 포장을 실시한다.
 12.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설치공사로 인하여 포장면과 공공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때의 절차는 제11조제3항을 따른다.
- 제8조(작업구 점검계획)** 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점검 : 작업구 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작업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점검이며, 작업구 관리자가 정밀점검의 수준으로 최초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작업구의 외관을 조사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른 점검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3. 정밀점검 : 작업구의 내부 및 외관에 대하여 간단한 장비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며, 작업구 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실시
 4. 긴급점검 : 작업구 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
- ③ 도로관리청과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작업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구 긴급조치) ①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 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정비공사의 비용부담, 인수인계절차, 관리책임 및 정산 절차는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작업구 정비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3.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4.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5. 도로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및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작업구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제4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에 따라 정비공사 시행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비공사 시행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상호 협의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따라 비용부담 및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공사 중 도로관리청이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제9조를 따른다.

1. 공사비용은 도로관리청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사 단위별로 도로의 공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설계하여 산출한다.
2. 공사발주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보수공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병행하여 시행한다.

3. 도로관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설계내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공사에 입회할 것을 요청한다. 공사입회요청은 공사시행 3일전까지 요청내역을 작업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4.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입회하고 준공을 확인한다.

5. 도로관리청은 공사비의 정산내역과 준공처리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작업구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뚜껑의 높이 조정이 불가능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작업구 본체의 승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작업구 정비공사에 따른 관리책임은 정비공사 착수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있다.

제11조(정비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말까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정비비용의 통지를 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당해년도 10월 말까지 도로관리청에 이를 납부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정비대상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량변동으로 인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 보수비로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작업구 관리자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정비비용의 정산내역과 작업구 관리대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연말까지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도로관리청은 기존 작업구가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많거나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구 관리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작업구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작업구 관리대장(제6조제3항에 따라 조사한 정보를 포함한다)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8호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 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조사 및 용역의 의뢰(안 제4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61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전용호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조사 및 용역의 의뢰(안 제4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제3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용역의 의뢰)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

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안 제4조(조사·용역의 의뢰)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교체 및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이 다르기에 비용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도시국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9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의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상담(안 제7조~제8조)
- 피해 직원 등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9조~제10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허위신고(안 제11조~제12조)
- 개선권고 및 비밀유지(안 제13조~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연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7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이연주 의원
찬 성 자 : 황규진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의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상담(안 제7조~제8조)
- 피해 직원 등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9조~제10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허위신고(안 제11조~제12조)
- 개선권고 및 비밀유지(안 제13조~제14조)

☐ 본 문 : “별첨”

☐ 참 고 자 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과 남동구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남동구 공직유관 단체(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

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피해 직원 등은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

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 제11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용역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은 남동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조례로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감사실장 홍 순 삼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3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0호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구성 원칙 (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제6조)
- 정책연구 (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제9조)
- 관련기관 등 협력과 지원·교육·홍보 (안 제10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8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제6조)
- 정책연구 (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제9조)
- 관련기관 등 협력과 지원·교육·홍보 (안 제10조~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구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구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구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남동구 청

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관련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 제8조 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장 최 명 숙

[참고자료]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

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1호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조례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폭염”에 관한 사항을 “폭염 및 한파”로 정비
- 폭염 및 한파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냉방용품을 냉·난방용품으로 확대 정비(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6조제2호, 안 제7조제2호)
- 재난도우미 운영(안 제8조)
-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강화(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9
----------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조례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폭염”에 관한 사항을 “폭염 및 한파”로 정비
- 폭염 및 한파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냉방용품을 냉·난방용품으로 확대 정비(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6조제2호, 안 제7조제2호)
- 재난도우미 운영(안 제8조)
-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강화(안 제9조)

☐ 본 문 : “별 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에어송풍

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6.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 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재난도우미”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통장 및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한파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한파 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한파 쉼터 냉·난방 장비 수선 및 냉·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핫팩 등 냉·난방물품

3.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5조(폭염·한파 예방사업),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따라 한파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5조, 제7조에 따라 한파 예방사업 추진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유 영 도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2호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 내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관련 사항(안 제3조, 제5조)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0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 내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관련 사항(안 제3조, 제5조)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특성과 남동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논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등 생활안

전 분야

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의회,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기 규정과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오 근 선

[참고자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3호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1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남동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 나. 관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학부모 교육
3.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정규교과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재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동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
3. 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이 은 미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4호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방문증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방문증 교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방문증 분실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
(서점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6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서점원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방문증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방문증 교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방문증 분실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남동구의회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경비와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남동구의회 청사를 말한다.
2. “출입관리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및 지문인증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의원 내방객 등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안전과 방호를 위하여 청사 내 주요 출입구에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 규격 및 양식)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방문증 교부) ① 의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방문 약속이 된 자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협의된 주요 인사, 교육·회의·행사 등 단체방문자 및 청사 출입 언론인, 공무원에게는 방문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청사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의장은 방문자의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방문증 교부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 또는 방문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3. 방문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 제3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6.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의장이 청사방호·관리상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7조(분실신고) ①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신고가 접수된 방문증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권한을 정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신고 후에 방문증을 되찾으면 분실했던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목적·신분증 등의 확인,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 대장 작성 관리
2.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
3. 제6조 방문증 교부 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
4.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
5.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6. 소란 민원·집회·시위 대응 및 그 밖에 의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7. 불법 집회,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촬영 또는 녹취하여 증거자료 확보

제9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의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수사,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인 요청에 따른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청사 출입시 제5조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관리) 의장은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출입관리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표 1]

방문증 규격 및 제식 (색상과 재질 포함)



규 격 : 54x86(mm)

재 질 : PVC(폴리염화비닐)

색 상 : 앞면 Yellow(R 255, G 255, B 0)

뒷면 White(R 255, G 255, B 255)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방문증 발급 신청서

○ 성	명:
○ 연	락 처:
○ 방문부서 / 담당자:	
○ 방 문 목 적: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 ① 수집·이용 목적: 청사 방문증 발급, 보안사고,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② 수집·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 방문일시
- ③ 보유기간: 3년(다만 방문증 등이 회수될 경우 신청서, 연락처는 즉시 파기)
-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신청자는 청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 시 청사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방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분실신고서

분실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직위(직급)		주소	

분실 내용	방문증 번호		분실경위	
	분실일시		분실장소	

상기 본인은 _____년 ____월 ____일 자로 교부받은 위 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 : _____년 ____월 ____일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남동구의회에서는 청사의 출입·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필수)	성명,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이용 목적	- 남동구의회 청사 방문증 발급 - 보안사고,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관계기관(수사·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따른 출입 기록 제공 - 청사 출입 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보유 및 이용 기간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방문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남동구의회 청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방 문 증 교 부 대 장

(교부장소 :)

일련 번호	방문일자	방 문 자 (민원인 등)			방문부서	방 문 증			
		성 명	방문목적	연락처		번호	교부시간	반납시간	교부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 설치에 따른 비용 발행
 - 총 소요예산 : 35,000천원 이내
 - 게이트 설치비용 : 27,900천원
 - 부대비용 : 7,100천원 이내
- (지문/카드리더기 설치, 방문증, 유리벽 시트지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김은구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5호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구매촉진 등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안 제7조)
- 장애인기업 우대(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이연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2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이연주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구매 촉진 등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안 제7조)
- 장애인기업 우대(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9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3.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5.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판로촉진 및 판로개척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3.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는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9조(포상)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시책·지원 사업 등이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 추이 비용이 발생할 시기에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추계하여 추진하겠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 종 화

[참고자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22. 10. 18.>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4.(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8.]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2. 10. 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16. 1. 2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17. 7. 26.>

②~⑦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6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 2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중소기업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전시판매장 운영을 이동마켓 및 관외지역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위치의 확대 (안 제2조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4. ~ 2.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53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24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황규진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중소기업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전시판매장 운영을 이동마켓 및 관외지역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위치의 확대 (안 제2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및 위치) (생략) <u><신설></u>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 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 영할 수 있다.</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설치 및 위치)

- ②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동형 마켓의 경우,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임의 장소에서 임시적으로 진행되는 1회성 사업으로 판단되어 기존 비품과 인력,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추진 가능해 비예산으로 추계함.
- 관외 지역 설치의 경우 지역, 범위,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 추이 비용이 발생할 시기에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추계하여 진행하겠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